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6. 12 선고 2013가단14861 판결 [부동산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

---

###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5671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6. 12 선고 2013가단14861 판결

### 전문

원고A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 선고 2014. 6. 1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5. 9. 접수 제22901호 압류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경료된 부동산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군산시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였고, 의료법인 D을 설립하여 위 의원 폐업 이후 같은 장소에서 'E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 및 의료법인 D이 위 각 의원을 운영하던 중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또는 구 의료급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진료비 및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보험자 등에게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4.자 7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2008. 10. 16.자 2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2008. 10. 17.자 5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진료비 77,534,057원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 63,219,910원을 전제로 한다)을 하였고, 의료법인 D에 대하여는 2008. 10. 14.자 7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2008. 10. 16.자 4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 부당금액 135,040,980원을 전제로 한다)을 각 하였다(이하 위 5개의 처분을 모두 합하여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및 의료법인 D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4273호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0. 10. 7. '원고와 의료법인 D이 비위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처분의 기초가 된 부당금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라는 이유로 1차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1차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차 확정판결 후 원고가 비위행위를 하여 66,709,332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56,357,930원의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을 보험자 등에게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24.자 4개월의 면허자격정지의 변경처분, 2011. 4. 21.자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의 변경처분 및 2011. 6. 3.자 2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의 변경처분을 하였고, 의료법인 D에 대하여는 2011. 4. 21.자 7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의 변경처분 및 2011. 6. 3.자 4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의 변경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5개의 변경처분을 모두 합하여 '2차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및 의료법인 D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388호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10. 25. '원고와 의료법인 D이 비위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2차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정한 부당금액 중 일부에 잘못이 있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2차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고등법원 2012누3670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5.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2차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비 환수 통보를 받고 2008. 11. 17.경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7,878,080원, 29,161,760원, 25,098,960원의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기한을 2009. 3. 31.로 정하여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위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5. 9.경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5. 9. 접수 제22901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차 처분 및 2차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위조사에 의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소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압류처분은 이미 취소된 보건복지부장관의 1차 처분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설령 보건복지부장관이 3차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이러한 사전통지가 있기 11개월이나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잘못이 있거나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으로 무효이다.

### 3.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주체 및 목적, 근거 법령 등을 달리 하는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1, 2차 처분의 위법성이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인 피고의 환수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처분은 피고가 그 후에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행위, 즉 체납처분과 각각 그 목적을 달리 하는 독립성을 갖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환수처분이 부존재한다던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한 환수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의 취소가 본질상 환수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납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처분이 있지 않는 한 체납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8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건복지부장관의 1, 2차 처분이 취소된 것은 1차 확정판결 및 2차 확정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다만 그 처분을 위하여

산정한 부당이득금에 잘못이 있어 그에 기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 2차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일 뿐 그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한 그 부당이득금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 및 그에 기초한 체납처분이 당연히 무효인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환수처분 또는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이진재**

별지